내부감사규정

제정 : 2006.03.01

제정 : 2008.12.17

개정 : 2011.03.01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0.01

개정 : 2022.12.01

개정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각 부서의 행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운영의 적정·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업무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8. 12.17.,2011.11.22.〉

제2조(법인감사와의 한계) 이 규정상의 감사 업무는 본 대학교 내부감사 기능에 국한하며, 학교법인 감사업무와는 별도로 한다.

제3조(감사기관) ① 감사의 직무는 본 대학교 미래전략처에서 담당한다. 다만 필요에 따라 총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직무를 따로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07. 01., 2020.03.01., 2022.10.01.. 2023.10.16.>

② 감사를 실시할 때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, 반편성은 미래전략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. 2023.10.16.>

제4조(감사대상)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는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.

제5조(감사의 범위)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- 1. 학교의 회계 <개정 2021.12.01.>
- 2. 각 부설·부속기관의 회계 <개정 2021.12.01.>
- 3. 학교의 입찰업무 <개정 2021.12.01.>

- 4. 학교 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행정업무 처리상황 <개정 2021.12.01.>
- 5.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업무 <개정 2021.12.01.>
-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회계감사에는 수입과 지출, 재산(물품,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다)의 취득, 보관,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제6조(감사의 종류와 내용)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. <개정 2021.12.01.>
 -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,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 다만, 외부기관에 의한 종합감사수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감사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, 2022.12.01.>
 - ③ 특별감사는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 부서장의 의뢰에 따라 특정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제7조(감사의 방법) 감사반은 각 부서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서면감사 외에 필요에 따라 실지에 파견하여 실제 감사를 할 수 있다.
- 제8조(감사인의 준수사항)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태도로 본 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 - ② 감사인은 관계법규·내규 및 총장 지시사항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 - ③ 감사인은 그 감사를 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 직원의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제9조(감사계획서의 작성, 제출) ① 미래전략처장은 감사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2.10.01.. 2023.10.16.>
 - ②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>
 - 1.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
 - 2. 감사의 실시기간 및 일정
 - 3. 감사대상 부서
 - 4. 감사내용
 - 5. 기타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

- 제10조(감사의 통지) 정기감사는 그 실시 1주일 전에 피감사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>
- 제11조(협조의무) 피감사부서 또는 소속교직원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 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 - 1. 각종 회계장부와 물품대장의 제출
 - 2. 계산서, 증명서 및 해명서의 제출
 - 3. 각종 결의서 및 품의서의 열람
 - 4. 창고, 금고, 장부 및 봉인
 - 5.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
- 제12조(감사보고서) 미래전략처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. 2023.10.16.>
- 제13조(감사결과 처분) 감사결과 지적된 중요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.
- 제14조(시정결과 보고) 시정지시를 받은 부서장은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미래전략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2.10. 01.. 2023.10.16.>
- 제15조(비밀유지)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사무 수행 중에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제16조(타 규정과의 한계) 타 규정 중 감사에 관련되는 사항이 이 규정과 중복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 부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최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